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수도법」·「공중위생관리법」 및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개정
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중 “급수장치”를 「수도법」에 맞게 “급수설비”로 변경함(안 제1조 등).
- 나.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4조).
- 다.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2호).
- 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종구분표 업태를 정비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 9. 22~10. 1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조제4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제1호·제2호, 제12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9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4조제3항제5호, 제27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30호·제34호중 “흡수장치”를 각각 “흡수설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구분”)을 (“급수설비의 구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2조제4항 중 “전용급수장치”를 각각 “전용급수설비”로 한다.

제4조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46조제2호·제14호 중 “공용급수장치”를 각각 “공용급수설비”로 한다.

제4조제3호중 “소화용급수장치”를 “소화용급수설비”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흡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를 “흡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을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를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

설비, 보조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로, 천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0조제 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뚝길공용급수장치”를 뚝길공용급수설비”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중 제1, 2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철거)”를 (급수설비의 철거)”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4호중 제19조의 2항”을 제19조제2항의”로 한다.

제46조제21호 내지 제23호를 제22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28조의2의 세대분할

제46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제34조의 납부고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다)

제46조제3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3. 영업용란과 4. 목욕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업	태
3.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식품보존업 ○ 이·미용업소(실면적 33㎡이하 제외)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육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의 안마시술소 ○ 숙박업(여인숙 제외) ○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 전당포 제외) ○ 병·의원(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제외), 가족병원 ○ 공연장, 유기장업, 오락장, 노래방 ○ 대형점, 도매센터, 시장 및 상가점, 대규모 소매점 	

업종구분	업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업, 세차장, 주유소, 가스충전소(석유판매소 제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20㎡이하는 제외), 창고보관업, 주차장업 ○ 관광업(단순관광 알선업 제외) ○ 양조업 ○ 예식장, 장의예식장(장의사 제외) ○ 전문사진 현상소(사진관 제외) ○ 사설학원(교습소 제외), 독서실 ○ 유원지 운영업,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 오피스텔, 리조트 및 이와 유사한 업소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임시용(최종단계 요율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입주시까지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 · 운반급수 · 수도관 파손 또는 공사시 출수되는 누수량 ○ 고시원(텔)등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태 	
4. 목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목욕탕겸 이발소 포함) 	

별표 5 1. 급수도용란중 “부정급수장치”를 “부정급수설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 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u>과 <u>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u></p> <p>2. <u>“급수공사”라 함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u></p> <p>3. <u>“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u></p> <p>4. (생략)</p> <p>5. <u>“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u></p>	<p>제1 조(목적) ----- -----대전광역시----- 시----- ---급수설비----- ----- ----- ----- -----</p> <p>제2조(정의) ----- ----- ----- (삭제)</p> <p>2. ----- -급수설비----- -----</p> <p>3. -----급수 설비----- ----- -----</p> <p>4. (현행과 같음)</p> <p>5. -----급수 설비----- -----</p>

현행	개정안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 관할 구역중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제3조(급수구역)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 ----- -----</p>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 ----- ----- 1. 전용급수설비 ----- -----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급수설비</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 1. -----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 -----급수설비----- 3. -----급수설비----- ----- -----</p>

현행	개정안
<p>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p>	<p>4. -----급수설비----- ----- -----</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③ (생략)</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p> <p>⑤~⑥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급수설비-----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p> <p>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의2(공용급수설비의 설치)</p> <p>①----- -----공용급수설비-----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p>	<p>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급수설비----- ----- -----</p> <p>②급수설비----- ----- ----- -----</p>

현행	개정안
<p>⑤ (생략)</p> <p>1.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급수장치를 할 때</p> <p>2.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p> <p>3. (생략)</p> <p>⑥시장은 급수장치가 부적합할 때 직권으로 시설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p> <p>⑦~⑧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1. ----- -----급수설비-----</p> <p>2. -----급수설비----- -----</p> <p>3. (현행과 같음)</p> <p>⑥-----급수설비----- ----- ----- -----</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 (생략)</p> <p>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다.</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 ----- -----급수설비----- ----- ----- -----</p>

현 행	개 정 안
<p>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 략)</p>	<p>----- ----- 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p> <p>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p> <p>3.~5. (생 략)</p> <p>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p> <p>8. (생 략)</p> <p>9. 급수장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p> <p>②~③ (생 략)</p>	<p>제18조(신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급수설비----- ----- 2. 급수설비----- ----- 3.~5. (현행과 같음) 7. 급수설비----- ----- 8. (현행과 같음) 9. 급수설비----- --- 급수설비-----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생 략)</p> <p>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공용급수설비----- ----- ----- ----- ③공설공용급수설비----- ----- -----</p>

현행	개정안
<p>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p>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급수설비-----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및 제2항-----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급수설비----- ----- -----</p> <p>②-----급수설비----- ----- ----- ----- ----- -----</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급수설비-----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각 호의 어느 하나----- -----급수설비----- -----</p>

현행	개정안
<p>1.~4. (생략)</p> <p>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p> <p>6. (생략)</p>	<p>1.~4. (현행과 같음)</p> <p>5. ----- -----급수설비-----</p> <p>6. (현행과 같음)</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p> <p>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급수설비-----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수도전 개전시 일괄 조정할 수 있다.</p> <p>②~⑫ (생략)</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 ----- ----- ----- ----- -----급수설비----- -----</p> <p>②~⑫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3. (생략)</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3. (현행과 같음)</p>
<p>제36조(제수수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5. (생략)</p>	<p>제36조(제수수료)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5. (현행과 같음)</p>
<p>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와 제9조에 의한 공사비(제수수료 포함), 제12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u>급수설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13. (생 략)</p> <p>② (생 략)</p>	<p>제40조(정수처분) ①-----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1.~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p>	<p>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급수설비 ----- 급수 설비-----</p> <p>②----- 급수설비-----</p> <p>----- 급수설비-----</p> <p>-----</p> <p>③제1항 및 제2항----- 급수설비-----</p>
<p>제44조(이의 신청) ①수도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권한 위임) (생 략)</p> <p>1. (생 략)</p> <p>2. 제6조의2 <u>공용급수장치의 설치허가</u></p> <p>3.~13. (생 략)</p> <p>14. <u>제19조의 2항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u></p> <p>15.~20. (생 략)</p> <p><u><신 설></u></p> <p>21.~23. (생 략)</p> <p>25. (생 략)</p> <p>26. <u>제34조의 납부고지</u></p> <p>27.~29. (생 략)</p> <p>30. 제38조의 <u>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u></p> <p>31.~33. (생 략)</p> <p>34. 제43조의 <u>급수장치의 철거</u></p> <p>35. <u>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u></p>	<p>제46조(권한 위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용급수설비</u>-----</p> <p>3.~13. (현행과 같음)</p> <p>14. <u>제19조제2항의 공용급수설비</u>- -----</p> <p>15.~20. (현행과 같음)</p> <p>21. <u>제28조의2의 세대분할</u></p> <p>22.~24. (현행과 같음)</p> <p>25. (현행과 같음)</p> <p>26. <u>제34조의 납부고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다)</u></p> <p>27.~29. (현행과 같음)</p> <p>30. -----<u>급수설비</u>----- ---</p> <p>31.~33. (현행과 같음)</p> <p>34.-----<u>급수설비</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업종구분표(제27조 관련)			(별표 4) 업종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업 태		업종구분	업 태	
1. 가정용	(생 략)		1. 가정용	(현행과 같음)	
2. 업무용	(생 략)		2. 업무용	(현행과 같음)	
3.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 략) ·(생 략) ·(생 략) ·점질방(목욕용과 겸업일 때에는 영업장 면적이 많은 업종 적용) ·(생 략) 		3. 영업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4. 목욕용	· 목욕장업(목욕탕 겸용 이발소 포함)				
5. 전용 공업용	(생 략)		4. 목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 이발소 포함)	
			5. 전용공업용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1. 급수도용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급수 장치 철거명령 ·(생 략) ·(생 략) 	1. 급수도용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4. (생 략)	(생 략)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수도법

(개정 전)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2. "給水裝置"라 함은 水道事業者가 일반의 需要者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配水管으로부터 分岐하여 設置된 給水管·計量器·貯水槽·水道栓 기타의 給水에 관련된 器具를 말한다.

(개정 후)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22.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2006.1.11>

[97헌가15, 1998.6.25(1988.4.6. 법4004)]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이의 신청) ①수도요금·기타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 호>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호(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6조(권한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허가
3.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제7조의2 준공검사
5. 삭제 <2005. 12. 30 조례 제3377호>
6. 제10조의 급수공사비의 산출
7. 제11조의 공사비의 선납

8. 제12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9. 삭제 <2005. 12. 30 조례 제3377호>
10. 제14조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11.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2. 제17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13. 제18조의 각종 신고처리
14. 제19조의 2항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5.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수리
16.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7.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8.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9.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20. 제28조의 요금의 조정
21. 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2. 제30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23. 제31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4. 삭제 <99.3.31 조례 제2834호>
25. 제33조의 가산금 부과 징수
26. 제34조의 납부고지
27. 제35조의 임시급수 및 요금수납
28. 제36조의 제수수료 징수
29. 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
30. 제38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31. 제39조의 급수표지의 교부
32. 제40조의 정수 처분

- 33. 제42조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 34. 제43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 35.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전)

3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후)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11. 28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11. 3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11. 3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8)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

1. 제안이유

「수도법」·「공중위생관리법」 및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중 “급수장치”를 「수도법」에 맞게 “급수설비”로 변경함
(안 제1조 등)
- 나.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4조)
- 다.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제21호)
- 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종 구분표 업태를 정비함(안 별표4)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 제22호 내용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내용이 2005년 3월 31일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용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수도법」, 「지방자치법」 규정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위임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적절한 문구의 개정 등 법령 및 현실과 부합된 급수행정을 수행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제22호에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목욕장업에 찜질방이 흡수 통합되어 현행 조례 제27조 관련 안 별표4 업종구분표의 찜질방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의 정의를 공중위생관리법과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
- 「수도법」 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행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 세대분할에 대한 업무를 지역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이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조문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